

第5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5月21日(火) 午後2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1.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
-
- 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提出)

(14時05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 鍊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개정 내용 중 3항 신설시 종점 구분 이렇게 해서 사용시점 경기나 행사 관련 설치 시작, 사용종점 경기나 행

사관련 시설 철거 완료 이 행사관련 시설 설치 시작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總務局長 白亨煥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까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한다 할때 우선 앞에 무슨 예를들어 말하면 무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설물을. 그 시설물 설치 안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시설물을 철거 안하게 되면 사용시간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용시간으로 간주한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總務局長 白亨煥 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朴時俊委員 그러면 각 운동장에 마찬가지로 공용으로 합니까?

○總務局長 白亨煥 운동장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체육관.

○朴時俊委員 체육관 안에.

○總務局長 白亨煥 네, 그렇습니다.

○宋夏星委員 아니죠.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경기를 안해도 그런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냅니까?

○總務局長 白亨煥 철거를 안하면.

○朴時俊委員 아니, 체육시설이라하면 거기 운동장, 축구장, 전부 다,

○朴時俊委員 그렇죠. 그런데 무슨 행사관련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專門委員 宋 鍊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를 어떤 단체가 체육대회를 한다 해서 천막을 친다거나 단상을 만든다거나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상 경기 시작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체육관에서는 시설, 행사하기 위한 시설설치를 8시부터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사용료 시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기를 10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부터 사용료를 내야겠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임대하는 체육관 관리자 측에서는 8시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깐 이것을 아예 명문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시작한 것은 그 체육관 시설을 설치하는 때부터 사용한 것이니까 사실상.

○朴時俊委員 그 시설은 대부분이 경기장 외에 Space에다 시설을 한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이전에 시설이전에도 그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해.

○專門委員 宋 鍊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실내체육관 전체를 빌려가서 행사를 한다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할 때는 본부석도 차려야 되고 할 때는 그 행사를 임대 사용하는 주최측에서 그것을 경기는 사실상 10시부터 시작하더라도 8시부터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 이겁니다. 각종 본부석도 설치하고 그럴 경우에 그 사용시간 시점은 사실상 시설 설치하는 8시부터 사용시간으로 본다 이런 얘기에요.

○朴時俊委員 그럼 이게 실내체육관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아 뭐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시설하는 게 뭐가 있어.

○專門委員 宋 鍊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이런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朴時俊委員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委員長 徐化錫 시설물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경기를 한다그러면 오늘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전날. 그렇게 되면 전 같으면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자 구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宋夏星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료를 어디에서 분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동안이면 3일 동안 예약해 놓고 뭐 3일 내에는 밤이거나 낮이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주야를 구분해서 12시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이상하네요.

○專門委員 宋 鍊 그런데 이게 전일 사용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간 사용료가 있거든요. 오전만 사용한다든지 오후만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시설을 철거한다거나 설치한다거나 그 시간 동안은 다른 팀이 와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宋夏星委員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徐化錫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宋夏星委員 아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군데나 되느냐 이겁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체육관 주 경기장하고요, 체육관 안에,

○宋夏星委員 체육관요?

○總務局長 白亨奭 우리 구민체육관요.

○宋夏星委員 구민체육관.

○總務局長 白亨奭 주경기장하고 축구장,

○宋夏星委員 축구장은 어디입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朴時俊委員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경기장 행사 관련 시설은 어떠한 것이 시설인지, 천막 쳐봐도 시설인가?

○總務局長 白亨奭 그렇습니다.

○朴時俊委員 그러면 대부분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서부터 쳐가지고 저녁에 경기가 끝날때까지 경기에 지장없는 한 계속 쳐 놓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 완료할 한 시점으로 한다 하면,

○總務局長 白亨奭 종점으로 하죠.

○朴時俊委員 종점으로 한다 하게 되면 너

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이게. 하다보면 다른 경기도 안 들어와,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축이라도 하면 늦게까지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없는 항을 집어 넣는 것은 골 차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해.

○總務局長 白亨奭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혹하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경기가 이어서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또 다르게 생각해 주셔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가 이어서 계속 있는데 가령 철거를 안해 주고 계속 있으면 다음 경기할 분이나 할 사람들이나 주최측은 지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朴時俊委員 시간이 08시부터 18시, 18시부터 있으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그 시간내에 딱 지켜주시면 좋은데 그 시간 내에 경기만 끝내고 가 쉬버리고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면 저희 구청 입장이나 주최측 그 다음 경기를 해야 할 주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죠.

○朴時俊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게 대부분이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천막같은 것 쳐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단상 만드는 것은 실내 체육관 아니면 그런 게 없습니다. 천막 같은 거야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설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는 것도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인데 단 이런 것이 극히 없는 항을 신설한다 하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가요.

○總務局長 白亨奭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이런 분쟁이 있을까 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時俊委員 넘어 갑시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윤홍노위원님.

○尹弘老委員 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고 허가된 일자 이후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계속 사용료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대체가 되겠습니까마는 허가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계속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 문제만이

아니라 허가 조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행사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허가 조건에 구청 당국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허가 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는지도 여기에 여러가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오물 등 쓰레기 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용료 속에 오물 수거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 사람들이 완전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윤홍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절차는 저희 체육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소정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체육관에 나오셔서 신청서에 기재를 하셔서 체육관에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쪽 일정을 봐서 빈 날짜에 허가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 후에 불철거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고의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할 때 강제 철거 규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현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최측에서 오물을 주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오물을 치우고 사용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기재를 못했습니다. 아, 허가일자 이후에 철거를 안 했을 때 계속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데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이 조례가 오늘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尹弘老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명문화해서 규정화하지 않더라도 허가 조건에 쓰레기오물 처리는 어떻게 하라든지 또는 허가 기간 경과 후에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A단체에서 사용하다가 B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허가를 해 주고도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예를 들어서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이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청 당국에서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허가

조건에 명시해서 허가할 수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강제철거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弘老委員 그런 경우는 허가 조건에 명시할 하므로 철거를 해도 허가권자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러니까 명문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 줄 당시에 각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유인물을 써서 사용을 해 준단다든가 그렇게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되겠군요.

네, 송하성위원님.

○宋夏星委員 송하성위원입니다. 사용료 문제 때문에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분쟁의 소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요? 그리고 또 사용료 징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지는 지금 18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로 해 놔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금 나와서 1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지금까지 사용료 관계로 분쟁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18시부터 사용하신 분이 2시간 사용하든 3시간 사용하든,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야간 사용은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다 이것을 분명히 해 놓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해주신 구민 부담관계는 이전에 이미 저희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금년 1월10일로 개정되고 '95년3월6일자로도 규정되고 해서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번 조례안은 다만 주 야간 구분과 시 종점 구분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 주민부담이 있거나 이것은 일체 없습니다.

○宋夏星委員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한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저희가 어

디에 있는지 사실은 성북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 해서 내가 사용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치면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분쟁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경우에 따라서 적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례안에 분명히 명시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입니다.

○朴時俊委員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신설한 조례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성북구 같이 주민들의 여가시설이 없는데서 이런 시설을 철거를 안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조금 더 연장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도 알겠지만, 타구같은 데서는 전부 공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축구장 같은 데에 라이트 시설도 안되는 것이 무슨 8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 밤에 거기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체육관 같은 것 실내체육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테니스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라이트도 없이 밤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체육장 사용하는데 비용, 이런 것은 어느 규정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체육이외 행사는 12만5,000원씩,

○總務局長 白亨奭 박시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관도 박시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무료로 사용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수입을 올려서 우리 구민에게 다른 방향으로 이익을 드리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 무료 사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무료사용이 아니라 임대를 해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용료 당초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처음에 당초에 제정을 할때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준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時俊委員 체육이외의 행사.

○總務局長 白亨奭 예, 체육이외의 행사는 체육행사는 말하자면 얼른 말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체육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것은 체육관을 사용하는 취지에 비춰봐서 그래야 형편에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時俊委員 이 체육관에는 전기시설이 많은데, 그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나 나오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현재 전기료가 한달에 80만원정도입니다.

○朴時俊委員 그랬을적에 그러면 12만5,000원 행사가 4시간인데 4시간 썼을 적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 계산해 보셨는지, 4시간에 따른 전기료.

○總務局長 白亨奭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시간당 한 5,000원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時俊委員 이 12만5,000원이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기료로 거기에 나오는 행사 끝나고 나서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 4시간 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계산해서 12만5,000원이 적정수준인지, 예를 들어 시설 훼손을 했든지 만약에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예.

○朴時俊委員 그런 조례가 있어요?

○總務局長 白亨奭 예.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尹弘老委員 '96년도 현재까지의 체육관 사용실적을 밝혀주시죠.

○總務局長 白亨奭 '96년4월30일까지 4월30일 현재로 4,641만4,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尹弘老委員 몇 개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단체는 주경기장 외에 여러가지 탁구장, 헬스장, 취미스포츠교실이 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용료 총

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崔桂洛委員 주수입원이 헬스클럽이니 이런 데서 나온 것 아니에요?

○總務局長 白亨奭 주경기장에서 나옵니다, 주수입원은

○崔桂洛委員 축구장 이런 데서요?

○總務局長 白亨奭 아니, 주경기장. 체육관 안에.

○崔桂洛委員 헬스클럽 사용료 얼마나 받아요? 그게 헬스클럽 같은 경우 월 얼마 이렇게 받을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헬스클럽은 월 3만원입니다.

○崔桂洛委員 그러면 거기 헬스클럽에 지도 강사는 전문 체육인입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지금현재 헬스클럽의 지도 강사는 초빙되지않고 각 회원들이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散會)

○出席委員 13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金 壽 榮	金 振 權	朴 時 俊
宋 夏 星	申 宗 鉉	安 傑 珞
俞 鎮 武	尹 晚 丸	尹 弘 老
崔 桂 洛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

○參席公務員

總 務 局 長	白 亨 奭
---------	-------